

#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7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6. 3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등 임원의 부적정한 임명 예방 및 문구 정비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상근 임원을 임명할 때는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공직선거법」, 「정치자금법」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여야 하므로, 조례에 “**임원결격사유 규정**”을 신설(안 제7조의2)

나.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항 문구 정비  
(안 제12조제2항)

## 3. 근거법규

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

##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의견없음

라. 입법예고: 2017. 5. 22. ~ 2017. 6. 12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47호

##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임원의 결격사유)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0조를 적용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.

제33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인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」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근거법규

### 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

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5.12.15.>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삭제 <2015.12.15.>

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의안 번호	1373	[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6. 30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1.(화)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예산실장 김혜경)

#### 가. 제안이유

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등 임원의 부적정한 임명 예방 및 문구 정비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의2)
- 2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다. 근거법규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영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임원을 임명하고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